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기업지배구조헌장

전 문

주식회사 노루홀딩스는 '나의 조국을 위하여' 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며 함께 사는 세상이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 이라는 경영철학 아래 끊임 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노루홀딩스는 지속가능한 변화와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될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아래와 같이 선언하여 주주를 보호하고, 독립적인 이사회의 활동과 감사기구를 통해 투명한 책임경영을 지향하며,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참여가 편리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 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③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시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5조 [이사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해당 기업과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검직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 ⑥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 ②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보관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 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 별로 기록한다.
-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 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⑤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② 이사가 경영 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의 평가와 보상]

①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을 주주와 장기적인 이해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주요사항 및 주요경영진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감사기구

제11조 [감사]

①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감사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는 동 규정의 타당성을 매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사는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주요 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 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⑥ 외부감사인인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 한다.

② 회사는 소비자 보호, 환경 보호 등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 한다.

④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한다.

⑥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경영감시 참여]

① 채권자의 경영감시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특성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② 근로자의 경영참가 형태와 수준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 5 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②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Chief Financial Officer)는 공시되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⑧ 회사는 기업 윤리규정(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⑨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영업의 양수도 등 기업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 ③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